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등 채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장 1명)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운영중인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급역량개발팀”을 “구급의료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급역량개발팀장”을 각각 “구급의료팀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4”를 “285”로, 소방위 “60”을 “61”로, 소방교 “8”을 “7”로,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0”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중 “구급역량개발팀”을 “구급의료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역량개발팀장”을 각각 “구급의료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 · 화재대응조사과 · 구조과 · 119구급과 및 <u>구급역</u> <u>량개발팀</u> 을 두며, 대응총괄과장 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 과장 · 구조과장 및 119구급과 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 로, <u>구급역량개발팀장</u> 은 과학기 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3조(119대응국) ① ----- ----- ----- <u>구급의</u> <u>료팀</u> ----- ----- ----- -- <u>구급의료팀장</u>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구급역량개발팀장</u> 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⑥ <u>구급의료팀장</u>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u>구급역량개발팀</u> 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구급의료팀</u>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구급역량개발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구 급역량개발팀장</u>이 분장하는 사 항은 119구급과장이 분장한다.	② ----- <u>구급의료팀장</u>----- ----- ----- ----- <u>구 급의료팀장</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284		285		+1
	•		•		•		
	•		•		•		
소방위			60		61		+1
	•		•		•		
소방교			8		7		-1
일반직 계			41		42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 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신 설>		11	+11	

